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880
----------	-------

발의연월일 : 2026. 10. 13.

발 의 자 : 장종태 · 황운하 · 조승래
박정현 · 박범계 · 임미애
황정아 · 허성무 · 이강일
소병훈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재난 대응 · 국가안보 ·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정책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철도사업은 사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절차로 인해 개통까지 약 13년에서 20년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의 장기화로 공사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총사업비 증가 및 경제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실제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건설공사비지수는 최근 10년간 50퍼센트 이상 상승하였음.

이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수도권 외 지역의 초광역권 철도사업 등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되, 그 대상 사업의

내역과 제외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초광역권 철도망을 신속하게 구축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38조제2항제11호 신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지역 균형발전 및 초광역권 교통망 확충을 위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철도 건설 또는 개량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둘 이상의 시·도를 연결하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초광역권발전계획에 반영된 사업

나. 가목에 따른 사업의 계획된 열차 운행에 직접 필요한 구간의 선로용량 부족 또는 철도망 단절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 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38조제3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거나 기획예산처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사업, 제38조제1항·제4항 또는 제85조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생략)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 ----- ----- -----.
1. ~ 10. (생략)	1. ~ 10. (현행과 같음)
<u><신 설></u>	11. <u>지역 균형발전 및 초광역권 교통망 확충을 위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철도 건설 또는 개량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 <u>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둘 이상의 시·</u>

③ ~ ⑥ (생략)	<u>도를 연결하는 사업으로</u> <u>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u> <u>형성장에 관한 특별법」</u> <u>제9조제1항에 따른 초광</u> <u>역권발전계획에 반영된</u> <u>사업</u> <u>나. 가목에 따른 사업의 계</u> <u>획된 열차 운행에 직접</u> <u>필요한 구간의 선로용량</u> <u>부족 또는 철도망 단절을</u> <u>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u> <u>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u>기준에 해당하는 사업</u> ③ ~ ⑥ (현행과 같음)
-------------------	--